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470
----------	------

발의연월일 : 2021. 1. 19.

발의자 : 김형동 · 박대수 · 조수진
최형우 · 조명희 · 이종배
박덕훈 · 정운천 · 위이자
추경호 · 송언석 · 배현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음.

지난해 12월 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 위원회가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였음. 같은 달 4일에는 미국 연방 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50 개국 이상의 나라가 이미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의료제품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를 경북 안동에 설치하여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에 대해 합법적으로 생산, 가공,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

대마의 성분 중 일부는 남용이나 의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뇌전증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

어, 마약류로 일괄하여 규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TIIC 0.3% 이하인 대마는 의료용 뿐 아니라, 섞유, 사료, 가공성 식품, 화장품 등 그 용도가 다양하고 해외 시장도 매년 24%씩 성장하고 있어, 관련 법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마의 성분 중 TIIC의 함유량이 0.3% 이하인 것은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품은”을 “제품, 나무부터 바
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합성물·혼합물질·혼합제제 중 테트라
히드로칸나비놀(delta-9 Tetrahydrocannabinol)의 함유량이 0.3% 이하
인 것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약)	1. ~ 3. (현행과 같음)
4. “대마”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 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u>제품</u> 은 제외한다.	4. ----- ----- ----- ----- ----- ----- ----- ----- ----- ----- ----- ----- ----- ----- ----- ----- ----- ----- <u>제품</u> , <u>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합성품·혼합물질·<u>혼합재재</u> 중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delta-9 Tetrahydro cannabinol)의 함유량이 0.3% 이하인 것은-----.</u>
가. ~ 라. (생약)	가. ~ 라. (현행과 같음)
5. ~ 9. (생약)	5. ~ 9. (현행과 같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 담당자 : 000부 000과 000(전화번호 기재)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